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98호, 2024. 2. 13. 공포, 2025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절차·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를 위한 제원 통보 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번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(안 제39조제1항제4호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대상 규정(안 제40조의17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간주 규정 신설(안 제40조의18)
- 신고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경미한 사항 규정(안 제40조의19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업무의 대행 범위 규정(안 제40조의20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변경인증 절차 신설(안 제40조의21, 별지 제24호의6서식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절차 신설(안 제40조의22)
-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(안 제40조의23)

3, 별표 5의10)

- 자동차 사이버공격·위협 신고 절차 신설(안 제40조의24)
-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합성 확인 절차 등 규정(안 제56조의12, 별지 제34호의6서식)
-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들의 자료 제출 절차 등 규정(안 제56조의13, 별지 제34호의7서식, 별지 제34호의8서식)
-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자료 제출 절차 등 규정(안 제56조의14)
-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적용 예외 대상 자동차 규정(안 제56조의15)
-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절차 등 규정(안 제56조의16)
-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시정조치 계획 및 진행상황 보고 시기 및 내용 등 규정(안 제56조의17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없음

라. 입법효과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세부기준을 명확화 하여 자동차의 사이버 안전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